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40

발의연월일: 2025. 1. 15.

발 의 자 : 임광현·강득구·이정문

김용만 • 안도걸 • 한정애

복기왕 · 노종면 · 김정호

허 영・강유정・한민수

전용기 • 오기형 • 박지원

정일영・김 유・허성무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상 독립기관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수입·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 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도록 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등).

법률 제 호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제30조제6항"을 "제30조제7항"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 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 ④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5) -----따른 지출은 제30조제6항에 따 -----제30조제7항-----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 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30조(자금계획) ① ~ ④ (현행 제30조(자금계획) ① ~ ④ (생 과 같음) 략)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 ----. <후단 삭제> 다만, 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에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따른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 <단서 신설> 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 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여 야 한다. <신 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 정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 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 야 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및	<u>⑦</u>
제5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	제6항
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그 소	
속 지출관별로 월별 세부자금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u>⑦</u> 제1항부터 <u>제6항</u> 까지의 규	<u>⑧</u> <u>제7항</u>
정에 따른 자금계획의 작성 및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